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22

발의연월일: 2022. 12. 8.

발 의 자:이탄희·홍정민·윤건영

윤영덕 • 김한규 • 최강욱

박주민 • 권칠승 • 이용선

장경태 · 박완주 · 강민정

김상희 • 이형석 • 임호선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.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.

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 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, 2개월에 불과해

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,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다목, 제3조제1호, 제5조제6항, 제8조제4항, 제9조제5항 단서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"도달"을 "도달(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)"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"경고"를 "서면경고"로 한다.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제5항 단서 중 "두 차례"를 "세 차례"로, "2개월"을 "3개월"로 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

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-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
- 제17조의3(통지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· 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·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,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·형집행정지·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 판 및 신병(身柄)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

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제6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스토킹행위"란 상대방의 의	1
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	
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	
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	
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	
것을 말한다.	
가.•나. (생 략)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	다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	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	
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	
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	
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	
림·영상·화상(이하 "물건	
등"이라 한다)을 <u>도달</u> 하게	<u>도달(물건등</u>
하는 행위	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
	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
	달한 것으로 본다)

라. • 마. (생 략) 2. ~ 4. (생략)

- 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 저 한 응급조치)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 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 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스토킹행위의 제지, 향후 스 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 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. ~ 4. (생략)
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 기 청)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

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~ ③ 제8조(잠정조치의 (생 략)

라.•마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
한 응급조치)
1
<u>서면경고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
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
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고 피
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
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
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
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
다. 이 경우 법원은 1개월 이
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응급
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.
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~ ③

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 조치) ① ~ ④ (생 략)

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 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	를	청-	구히	는	경우	-에	느	ス) え	1	없
	<u>0]</u>	ユ	사	실을	피	해ス	}	] -	1	법
	정 t	개리	인인	게게	돌	통지	하여	야		한
	<u>다.</u>									
제	9조	(스	. 토ョ	킹 행	위지	-에	대	한	잠	정
	조기	치)	1	~ (	4 (	현형	행과	같	음	)
	<b>(5)</b>									
					-세	ラ	사례			
					<del></del> 월-					
제	173	조의	]2(3	피해.	· 자에	디	하	변	호	사
					1					
					<u>)</u> . 법					
					을 수					
					=' 률적					
					<u>년</u> 변.					
	,	,		, ,	_ `		_	_		_

④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

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 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-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

<신 설>

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통지)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체포·구속 및 석방과 관련 된 사법경찰관·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,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·형집행정 지·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 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(身柄)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피해자 및 그 법 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